

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!
그리고 교육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종배 의원입니다.
- 이렇게 선배·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현행 「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르면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시설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, 공립·사립 구분 없이 서울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시설(체육시설)을 연간 일정 이상 개방할 경우, 시설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학교들의 실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.
- 이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매년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

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,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, 교육감이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각급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-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-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